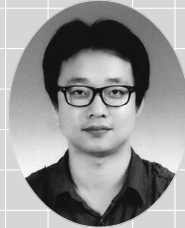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이해

Understanding of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최두선*
Doo-Sun Choi



김기호**
Ki-Ho Kim

1. 들어가며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치중한 정책은 환경보호문 제와 충돌을 야기하여 언제나 긴장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보호라는 당위를 위해서 각종의 규제법령을 동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법령은 경제성장이라는 또 다 른 당위에 가려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환경보호도 제 대로 하지 못하면서 각종 규제에 묶여 경제성장도 발목을 잡히는 악순환의 고리에 묶여 있었다.

한편 세계는 지금 심각한 환경오염 및 경제불황에 시달 리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의 부족과 기후변 화로 대표되는 환경위기는 인류의 생존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경은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질 서에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어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이미 환경을 새 로운 성장엔진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악순환의 고 리를 끊고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환경기준 에 적응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과제로 선 정하여 경제발전은 물론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환경을 제 공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하여, 녹색성장의 의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정부정책이 건 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녹색성장이란

2.1.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20세기 말부터 국제환경회의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 는 용어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 즉 3E (Economic, Environmental, Equity)를 3대 축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은 1987년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발간한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지난 1992년 6월 브라질 리 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 리우선언”과 “의제 21”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지구촌 번 영의 중심 개념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과학자들의 연구 차원에서 논의되던 기후변화는

* (주)다산글로벌컨설팅

Dasan Global Consulting

E-mail : doosun.choi@gmail.com

** (재)다산지역발전연구원

Dasan Region Development Institute

1979년 스위스에서 열린 “제1차 세계기후회의(WCC)”을 계기로 범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마침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정상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고 157개국이 공식서명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의 온실가스 규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교토의정서(1997), 발리로드맵(2007), 코펜하겐합의문(2009)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새롭게 진행되게 되었다. 즉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기후협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면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이라는 문제이외에 에너지 안보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토마스 프리드먼이 지적한 것처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Crowded), 이들이 모두 미국인들처럼 에너지와 자원을 마구 쓸 수 있는 평등한 시대가 온다면(Flat), 지구가 지금보다 더욱 뜨거워(Hot)지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지구의 에너지-자원이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하는 것과 “이 경우 어떤 국가가 이러한 자원고갈의 시대에 살아남겠는가?”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전략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던져진 화두가 된 것이다.

2.2. 녹색성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라는 환경재앙과 에너지-자원 위기가 겹쳐져 실로 문명사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새로운 문제가 던져진 것이며, 이에 대한 국제적 공조 분위기가 무르익음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전략적 차원’의 대응책이 바로 “녹색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경제-환경-사회에 걸친 광범위하고 원론적인 원칙으로서 다소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반면, 녹색성장은 ‘전략’이라는 단어의 수식을 받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환경과 경제의 동시 추구에 초점을 두고 구체성과 실행성을 강화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00년 1월 「이코노미스트」지가 최초로 언급한 “녹색성장”의 개념은 특히 저개발국가에 밀집되어 있고 개발속도가 높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방식으로 다보스포럼(Davos Forum)을 통하여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005

년 제5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회의(MECD)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SI)*’가 채택되어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우리정부는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하였다.

이렇듯 저개발국가의 개발방식으로 제안된 녹색성장이 우리나라의 최우선 국가 아젠다로 급부상한 이유는 2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아니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의무를 요구받고,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서도 제외 된다는 것이다. 둘째, 현 기후변화 문제는 기존 환경문제와는 차원을 달리 한다는 점이다. 즉 전통적인 환경문제는 ‘오염저감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투자를 개시하여 환경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 적용되는 반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는 직접적인 저감기술 혹은 후처리기술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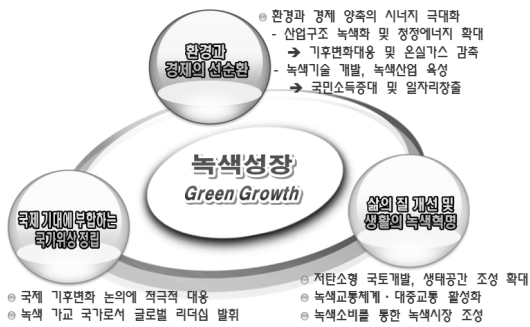
현재까지 전 세계적 관심사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 가능한 대안은 저탄소 업종으로 전환, 에너지 효율 개선, 생산량 조절 등 간접적인 방법들이며, 이러한 방법들은 막대한 비용투자를 수반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과거의 성장방식인 “경제성장+환경오염방지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채택한 것이 “녹색성장”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9년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녹색성장”을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며,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그림 1).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SINGG) :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성과 증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환경의 역할 제고라는 3대 정책목표 아래 24개 정책분야에 대한 제언을 포함.

**Environmental Kuznets Curve :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나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대되면 소득분배가 개선된다는 러시아 경제학자 Simon Kuznets의 이론을 환경문제에 확장한 이론으로 경제성장 초기에는 환경오염이 증가하나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약 8,000\$)을 초과하면 환경오염이 감소한다는 이론



[그림 6] 녹색성장의 개념

이와 더불어 정부는 그림 2와 같이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녹색성장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전략과 10대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다. 또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중기계획으로 2009년 7월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은 3대 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50개 실천과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7] 녹색성장의 비전 및 전략과 정책방향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요

3.1. 제정배경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 각국은 경제침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위기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 경제 회복과 기후변화·에너지 문제 대응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정부조직 개편과 법률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년 80%, 2020년 26%)를 법에 명시하고 탄소예산(Carbon

Budget) 도입의 내용으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11)」을, 프랑스는 2020년까지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인 저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기후·건설·녹색소비·생물다양성·지속가능발전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그르넬 환경법 I」을 제정하였다. 호주의 경우는 「국가 온실가스·에너지 보고 의무법(National Greenhouse & Energy Reporting Act, 2007.9)」을 제정하였고, 2010년 7월부터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탄소오염 감축방안 법안(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Bill)」을 2009년 3월 10일 발표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2009년 5월 21일에 미국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수준 설정, 재생에너지 생산목표, 배출권 할당에 의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Cap & Trade)의 도입, 미국 기업의 경쟁력 보호조치 및 국경 조치 발동기준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안보법(Waxman-Markey법)」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1997년 「지구온난화 대책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3차례의 법 개정을 단행하였으며, 2009년에 출범한 하토야마 정부는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를 감축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도입 등의 내용으로 「지구온난화 대책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및 국제적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으로 표방하고, 녹색성장위원회 발족(2009.2.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국회제출(2009.2.17),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2009.7.6),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2009.11.17) 등 관련법 및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필요 기반조성, 국민경제의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2010.1.13) 및 시행(2010.4.14)하고, 동법 시행령을 4월 13일에 제정·공표하였다.

3.2. 정책적·법적 의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에너지·환경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률로 선진국의 기후변화법, 에너지법 등 개별법과는 달리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

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녹색기술과 R&D, 녹색산업 구조로의 전환과 지원, 녹색국토·도시·건물·교통, 녹색생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세계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법의 정책적·법적 의미는 크게 8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에 관한 법”이다. 그동안 선진국들이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강조한 반면, 우리나라는 저탄소 사회구축과 함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종합법이자 경제산업발전 지원법”이다. 이 법은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녹색기술과 R&D, 녹색산업구조로의 전환·발전,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상위 규범적 성격을 지닌 기본법”이다. 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관련 타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타법의 제·개정 시에는 동법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토록 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토록 하였다.

넷째, “기능적 통합법”이다. 과거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2008년 정부안으로 제정 추진 중이었던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의 내용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지양하고, 관련법의 핵심내용은 통합하되 기존의 「에너지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폐지하지 않고 「에너지법」과 「지속가능발전법」과 같이 “관리법” 형태로 위상을 조정해 기능적 통합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목표관리형 성과관리법”이다. 종전 분리되어 수립·시행되고 있었던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책을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효율 등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관리방식을 도입하였다.

여섯째, “국제기준을 반영한 법”이다. 온실가스 의무보고제, 인벤토리 구축,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실시근거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조성하는 한편, 제반 제도를 설계하고 법적으로 규율함에 있어 UN·EU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기준을 고려하였다.

일곱째, “현실성과 유연성을 고려한 법”이다. 물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필요성 등을 규정하고,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그 도입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방식도 수용하는 한편, 세부내용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면서 정책의 합리성·

타당성 및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호(Signal)를 보내는 법”이다. 녹색경영성과의 공개, 환경친화적 세제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녹색 라벨링(Labeling) 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생산과 국민들의 소비패턴을 고효율·저탄소, 자원절약형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였다.

3.3 법의 구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그림 3과 같이 제1장 총칙,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7장 보칙 등 제7장 제64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 목적과 정의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 국가, 지자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 • 타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9조~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중앙·지자체 추진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등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제14조~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위원회의 기능 •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장 저탄소녹색성장의 추진전략 (제22조~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 자원순환 및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등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38조~제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정책에 대한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 •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 기후변화 영향평가, 적응대책 추진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 가능발전의 실현 (제49조~제5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 녹색국토의 관리에 대한 정부 시책 • 저탄소, 기후변화 및 녹색생활에 대한 각종 정책
제7장 보칙 (제60조~제6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 증진 • 국회 보고 및 국가보고서 작성 • 과태료

[그림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구조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

4.1.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원칙(제1장)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법 제3조)에서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모두 언급하는 등 환경-에너지-자원-경제-국토 등 실로 방대한 영역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 추진원칙은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 추진, 민간주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새로운 경제체계 구축,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 강화,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자원순환 촉진, 국토·도시·건물·교통·사회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 조세·금융체계 개편으로 자원을 효율적 배분 및 국민의 소비 및 생활방식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 전 국민이 참여하고 국가기관·지자체·기업·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 등이다.

특히 기본원칙의 모든 항목이 “정부는”으로 시작하고 있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이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제2장)

법 제9조에서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정부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녹색경제 체제의 구현, 기후변화대응 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녹색생활·녹색국토·저탄소 교통체계,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 협력 및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이에 정부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비전, 3대 목표 및 10대 전략을 설정하고(그림 2), 이를 실현하기 위한 50개 중점추진과제의 실행계획을 2009년 7월 수립하였다.

4.3.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체계(제3장)

법 제3장(녹색성장위원회 등)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체계로서 중앙과 지방의 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녹색성장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4.4.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제4장)

법 제4장은 “녹색”을 통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자산을 투자”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조항,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필무는 이를 “EU·영국·프랑스에서 제정한 법률이 주로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규제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기본법은 경제·사회 발전에 무게를 둔 지원법이라는 측면에서 창의성과 독자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법 제24조(자원순환의 촉진)에서는 정부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건설분야에 있어 기술 측면에서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지만, 건설생산과정에 있어서는 친환경 규제가 강화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4.5. 저탄소 사회의 구현(제5장)

법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적 조치들을 규정한 장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와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의 도입,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온실가스 관리에 있어서는 법 제42조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도(법 제46조)와 환경친화적 조세제도(법 제30조)의 운영 등은 추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라의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목표(동법 시행령 제25조)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등 총괄 기능은 환경부장관이 수행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관리기관으로 건물·교통분야는 국토해양부, 폐기물 분야는 환경부, 산업·발전(發電) 분야는 지식경제부, 농업·축산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로 규정하였다.

4.6.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제6장)

법 제6장은 국민들의 녹색생활을 확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교통과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두어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분야의 관련 조항으로는 제51조(녹색국토의 관리), 제52조(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관리), 제53조(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이다.

녹색국토의 관리에서는 에너지·자원 자립형 탄소중립 도시 조성, 저탄소 항만의 건설 및 기존 항만의 저탄소 항만으로의 전환,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등이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관리에서는 빗물 이용·하수 재이용 등 수순환 체계의 정비, 자연친화적 하천의 보전·복원, 수질오염 예방·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이다. 또한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에서는 대중교통분담률 및 철도수송분담률 단계별 목표 설정, 철도를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자전거 등의 이용 및 연안해운을 활성화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법 제54조에서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을 시행하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녹색건축물의 기준을 명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의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5.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동법과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른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은 녹색기술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등이 주된 주제로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건설업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환경부의 '2008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도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총발생량은 1일 약 36만 톤이며,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생활폐기물이 15%, 사업장 배출 시설계폐기물이 36% 및 건설폐기물이 49%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26%에 해당되며, 건축물(24.5%)과 교통시설(14.3%)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이러한 현실과 법 제42조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실행됨에 따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규제와 성장 측면에서 건설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5.1. 친환경성 시공 기준 강화

법 제24조는 자원순환의 촉진을 통해 폐기물 발생의 억제와 재활용 자재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과 기술 측면에서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지만 건설생산과정에 있어서는 친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은 앞으로 공사 수행과정에서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기술과 방법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요구될 것이며, 특히 교통시설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일부 적용되고 있는 녹색도로 인증시스템의 경우 인증 항목의 과반 이상이 시공과정의 친환경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5.2. 녹색 도시·건축물의 지원 확대

법 제51조(녹색국토의 관리)에서는 녹색인프라의 주요 대상과 특징을 탄소중립도시,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과 보존, 녹색 항만, 친환경 교통체계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43조는 녹색 건축물에 대한 각종 원칙과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침 제정(2009.7)',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고시(2009.10)' 등 저탄소 녹색도시·건축물 조성을 위한 제도 및 기반 구축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시설물 역시 시공과정에서 친환경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용과정에서의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성 확보를 위한 첨단 기술과 요소의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도시의 경우 세종시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60%를 감소하는 모범도시의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지자체별로 '탄소중립도시' 혹은 '저탄소도시' 등의 이름으로 시범도시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탄소중립도시' 혹은 '저탄소도시'의 건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상당한 시행착오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5.3.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건설기업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설계와 시공의 생산역할뿐만 아니라 녹색기술, 녹색제품 등 연관업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요한 경우 관련 업체를 인수하거나 기술 제휴 등을 통해 선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활동은 본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조항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또한 동법 제24조(자원순환의 촉진)와 「건축법」 제66조(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에 의해 재활용 자재의 사용은 일정부분 의무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재활용산업의 성장에 따른 원가 상승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녹색빌딩건설이 실현가능했던 것처럼,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건설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재 재활용 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맺음말

녹색성장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고 이미 가고 있는 길이다. 우리나라가 환경·자원 위기를 넘어 새로운 국가 성장 모델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활용하는 것은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건설산업은 변화의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환경변화의 속도와 변화의 폭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빠르고 폭 넓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련분야의 다양한 집단이 보다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면 정부의 녹색 인프라 확산정책은 건설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2009. 7.
2. 이창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취지 및 의미, 월간법제, 2009. 11.
3. 환경부, 2008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보고서, 2009.
3. Thomas L. Friedman, Hot, Flat and Crowded : Why we need a green revolution and how it can renew America, New York : Farrar, 2008.
4. 류필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 : 변화의 시작, 나라경제, 2010. 6.
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의 당면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 2010. 8.
6. 국토해양부 등,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 2009. 11.